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변경전 : 하나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후 : 하나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내용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모투자신탁 추가
   - 펀드명 변경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신설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2017년 05월 23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 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 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모자형(자투자신탁)

	<신설>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하나UBS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고, 제4항 각호 이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신설	(본문, 현행과 동일) 1.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 17 조 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해당 내용 삭제	제2호 ~ 제8호 (삭제)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해당 내용 삭제	제2항 ~ 제4항 삭제
제25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11항 (신설)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⑪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분류** (추가)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모자형

<table>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신설)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td><td>60% 이상</td></tr>
<tr><td>채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신설)

</td>
<td>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
</table>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주식</td><td>60% 이상</td></tr>
<tr><td>채권</td><td>40% 이하</td></tr>
<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
<tr><td>어음</td><td>40% 이하</td></tr>
</table>

</td>
</tr>
<tr>
<td>II.
집합투자기</td>
<td>

2.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td>
<td>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td>
</tr>
</table>

구의 투자정보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신설)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하나UBS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하나UBS 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하나 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하나 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하나 UBS 태극건 증권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하나 UBS 태극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5월 23일

<table>
<tr><td rowspan="5">관한 사항</td><td></td><td>-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모투자신탁 추가
- 펀드명 변경</td></tr>
<tr><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별첨 1></td></tr>
<tr><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신설></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자집합투자기구]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비율</th><th>내용</th></tr>
<tr><td>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이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td><td></td><td>추구</td></tr>
<tr><td>유동성 자산</td><td>10%이하 (단, 대형 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이내)</td><td>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또는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td></tr>
<tr><td>기타</td><td colspan="2">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able>

<모투자신탁 추가>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집합투자기구에 기재 반영

나. 투자제한
<별첨2>
</td>
<td>
[모집합투자기구]
<별첨2>

나. 투자제한
<별첨3>
</td>
</tr>
<tr>
<td></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태극건증권모투자</td><td>90% 이상</td></tr>
</table>
</td>
</tr>
</table>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신설>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집합투자기구에 기재 반영	신탁[주식] |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 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생략)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생략, 현행과 동일)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신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나. 환매 (신설)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해 필요한 사항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별첨 1>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FirstClass 에이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나 UBS 태극건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별첨 2>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FirstClass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취득 시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30%까지 투자가능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별첨 3>

- 변경전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 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	

	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변경후

[자집합투자기구]

구분	내용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 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 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 4>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1)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 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추구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KOSPI 수익률 X 100%

(3) 위험관리

• 하나UBS FirstClass에이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 하나UBS 태극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